[한.중 사회보험협정 공식발효 공지]

|  |
| --- |
| **한중 사회보장협정 관련 국민연금공단 안내문** |
|  |
| **한국 - 중국 사회보험협정 발효**  **“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사회보험협정”**이 **2013년 1월 16일 발효됩니다.**  본 협정은 양국을 오가며 근로하는 파견근로자 및 현지채용자, 자영자, 투자자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중국의 사회보험제도 간 이중적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된 **“이중가입 면제협정(Contributions-Only Agreement)”**입니다.  양국 모두에서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했던 **파견 근로자 및 현지채용자, 자영자, 투자자**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“한국-중국 사회보험협정에 의한 **한국 가입증명서**”를 발급 받아, 중국 사회보험관리중심에 제출하면 다음과 같이 중국 사회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   |  |  |  |  |  |  |  |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| **대상** | **양로** | **의료** | **실업** | **공상** | **생육** | **면제기간** | | 파견근로자  (주재원) | ○ | △ | ○ | x | x | 최대 13년 | | 현지채용자 | ○ | △ | x | x | x | 5년 | | 자영자  투자자 | ○ | △ | x | x | x | 무기한 |     또한, **협정 발효전**부터 **중국에서 소득활동** 중이며 **중국 사회보험제도에 이미 가입**하신 분이 **협정 발효전**에 **중국에서 상해 및 질병**으로 인해 발생한 **진찰, 약품, 입원 비용을 보장하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**하셨다면 2014.12.31.까지 중국 의료보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(2014.12.31. 이전에 민간의료보험 만료시 중국 의료보험 면제 연장 불가)  ※**한국-중국 잠정조치**(2003.2.28. 발효)에 따라 **이미 중국 양로보험을 면제**받고 있는 경우에도, 이번에 발효되는 한국-중국 사회보험협정에 의한 **가입증명서를 새로 발급**받아 중국 사회보험관리중심에 제출해야 협정 **발효일 이후의 중국 사회보험료를 면제**받을 수 있습니다.  기타 동 협정과 관련하여 궁금하거나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(02-2176-8700)로 문의하시거나, **국민연금 홈페이지 협정 관련 부분(**[www.nps.or.kr](http://www.nps.or.kr) **- 연금정보 - 사회보장협정 - 협정체결국 - 중국)**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   **2012. 12.**  **국민연금공단 이사장**      [첨부) 한중 사회보장협정 FAQ(클릭)](http://www.korcham.net/FileWebKorcham/imas/20121220%20한-중%20사회보장협정%20FAQ(공관%20공지).hwp) |